

# 바

성폭력

**Vol. 6**  
2013 상반기

## 1

### 5 기획특집 [피해자 권리 보장 관련 성폭력 법개정]

- 8 성폭력 피해 인정 범위 확대
- 15 수사·재판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
- 22 심터 세분화, 상담 프로그램 제공자 확대, 성폭력 예방 강화

## 2

### 19 쟁점과 입장

- 20 균형법 상 추행죄 - 존재와 행위 사이에서 맴도는 차별과 혐오의 유명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양보다 질이다.
- 28 성폭력 피해유형에 따른 보호시설의 구분이 최선인가?

### 32 대안읽기

- 32 심터 퇴소 이후의 삶을 위한 준비

### 35 프리즘 [성폭력과 유명인]

- 36 유명인, 관찰자, 성폭력
- 41 납작하게, 더 납작하게 - 통념 속에서 성폭력 사건을 재구성하기
- 47 유명인 가해자의 성폭력 사건 현장

### 51 성문화 읽기

- 51 나 홀로 떠난다는 것은?

## 3

### 60 생존자 말하기

- 60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 그렇게 꿈을 꾸다.  
-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북콘서트를 보고 나서

### 64 성폭력과 사람들

- 64 엄마에게 쓰는 편지

### 69 사례연구

- 69 돈만 있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 4

### 74 통계 이야기

- 74 2012년 상담통계 분석

### 80 낱말퍼즐

### 82 아낌없이주는나무



# 1

기획특집 [피해자 권리 보장 관련 성폭력 법개정]

성폭력 피해 인정 범위 확대

수사·재판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

쉼터 세분화, 상담 프로그램 제공자 확대, 성폭력 예방 강화

{ 피해자 권리 보장 관련  
성폭력 법개정

2012년 한 해 동안 잔인한 성폭력 사건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화되었다. 성폭력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거세지자 국회는 9월, 총 18인의 여야 의원들로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개월 간의 논의 끝에 특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의결하였고 「형법」과 함께 11월 22일 이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2년 12월 19일 공포된 개정 법률은 대부분 올해 6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담소는 『반성폭력』 5호를 통해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의 의의와 정부의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방식에 대한 비판글을 실었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이번 성폭력 관련법 개정 중 피해자 권리 보장 부분을 중심으로 변화된 법의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집의 내용은 올해 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본 상담소 주최로 열린 <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 토론회 중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객원연구원 김정혜의 글 '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 관련 개정법 평가'에서 발췌하여 수정, 보완했음을 밝힌다.

## 성폭력 피해 인정 범위 확대

이번 법개정으로 성폭력 피해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동안 법의 공백으로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완 또는 완화되어 올 6월 19일 이후에는

보다 많은 피해자가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다.

### 강간 피해자에 성인 남성 포함

기존 형법에서는 강간 피해자를 ‘부녀’로 제한하고 있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처벌법)에서는 강간 및 간음 행위의 피해자를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2011년에 이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여자 아동·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으로 개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형법 및 처벌법상 강간죄의 객체가 모두 ‘사람’으로 변경되어 법적인 강간 및 위계에 의한 간음 피해자의 범주가 성인 남성에게까지 확대되었다.

### 비장애 성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 대상 유사강간죄 신설

처벌법과 아청법에는 이미 장애인, 13세 미만의 아동,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행위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행위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기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이나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질, 항문에 손가락이나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형법에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어 비장애 성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유사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형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보다 낮고 강제추행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유의미한 변화이지만 유사강간의 피해 정도나 행위 태양이 강간에 상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보다 약하게 처벌함으로써 강간의 위계를 만들어 낸 것은 한계로 보인다.

### 장애인 준강간죄의 요건 완화

기존 처벌법에서는 형법상의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준용하여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장애인준강간(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로 인해 생기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이 재판부에 따라 다르고 장애인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좁아 해당 조문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처벌법상 장애인 준강간죄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항거곤란’ 상태가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성폭력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갖게 되는 취약성을 고려할 여지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동거하는 친족에 의한 강간도 친족관계강간죄에 포함

기존 처벌법에 규정된 친족관계강간(또는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

행)죄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이다. 이로 인해 촌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동거하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친족관계 강간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동거하고 있는 친족도 친족관계강간죄의 친족범위에 포함되어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자도 처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 조항이 수정되었다. 기존 아청법은 행위수단을 위계(位階)나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했는데, 개정법에서는 행위수단으로 위력(威力)을 추가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를 이용한 성매매 강요행위의 처벌이 가능해졌다.

### 카메라이용촬영물에 대한 동의 없는 배포 처벌

기존 처벌법 상의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등의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촬영 동의가 제3자에 대한 배포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배포한 경우는 처벌할 수 없었다. 개정법은 촬영 당시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을 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처벌의 공백을 메웠다.

### 공중화장실 또는 목욕탕, 찜질방등을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자 처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찜질

방과 같은 공공장소에 침입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동안은 공공장소를 침입한 자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기도 어려웠고 침입한 자가 강제추행이나 카메라이용촬영과 같은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범죄행위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성적욕망 만족을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하는 것으로 범죄가 성립하므로 타인을 엿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침입한 자의 성적 욕망 만족의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확대

개정 전 처벌법과 아청법은 13세 미만의 여성,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한 형법상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공소시효 배제 대상에 13세 미만인 자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유사강간이 포함되었으며, 강간 등 살인죄는 피해자의 범위 제한 없이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아동 또는 장애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본인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가해자가 가까운 사람이거나, 가해자의 위협이 두렵기 때문에 피해를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결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공소시효가 가해자 처벌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아동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등 상당한 범위의 성폭력 범죄는 끝까지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되었다.

# 수사·재판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

이번 법 개정으로 형사사법 절차상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확대되었다.

피해자 신원보호 강화, 법률조력인제도의 대상 확대,

그리고 진술조력인 제도 신설 등이 이뤄짐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 성폭력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강화

이번 법개정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신고자, 고발인을 증인으로 신문, 조사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수사기관 조사 시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생략된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로 별도 관리, 인적사항 공개 보도 금지, 증인 소환 시 검사에게 소환장 송달, 증인 신문 시 증인 인적 사항 비공개, 피해자, 친족 등의 신변안전조치 요청 등의 적용이 가능해졌다

## 수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 배려 규정 정비

기존 처벌법에서는 ‘검사 또는 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 할 수 있도록 조사 환경을 조성하고 조사 횟수를 최소화’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법은 이 규정을 확대하여 ‘수사기관과 법

원이 피해자 조사 뿐 아니라 심리나 재판을 할 경우에도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 최소한의 횟수로 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나 심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원과 소송관계인도 가지게 되었다.

## 피해자 조사·신문 시 영상녹화 규정 정비

영상녹화 의무 범위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서 연령 기준 1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이 영상녹화 촬영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촬영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도 가해자가 친권자일 경우는 제외되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수사기관이 영상녹화 촬영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발급하도록 한 현행의 방식에 촬영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식이 추가되었다. 이번 개정은 아청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처벌법에 반영한 것이다.

## 증인지원실 설치규정 마련

대법원 규칙으로 도입되었던 증인지원시설 설치 및 증인지원관 제도가 처벌법에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은 성폭력 사건의 증인이 재판 전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과 마주치지 않고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증인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증인지원 업무를 담당할 증인지원관을 두고 증인지원관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정기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피해자국선변호사(법률조력인) 제도 확대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는 작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그동안 아청법상 19세 미만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적용되었다. 이 제도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수사재판과정에서 입을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6월부터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피해자의 변호사 선임이 일반화되어있지 않고 아직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률조력인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 등에 법률조력인의 지정과 조력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법률조력인의 역할과 권한을 안정화하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이번 개정으로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조사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과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심리 및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진술조력인이 조사 및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하게 되었다. 이는 아동이나 장애에 대한 이해 없이 조사함으로써 잘못된 진술을 받거나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한편 이번에 도입된 진술조력인 제도는 '원활한 조사, '원활한 증인신문'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보다는 형사사법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법무부 양성과정을 거쳐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 쉼터 세분화, 상담 프로그램 제공자 확대, 성폭력 예방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시설과 상담·치유프로그램,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와 예방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변화되었다.

## 피해자 보호시설의 세분화 및 입소기간 연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로 세분화되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 미만인 친족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해 왔던 기존 아동·청소년보호쉼터의 명칭을 바꾼 것이고, 보호시설 퇴소자를 위한 자립 준비시설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이번에 신설된 것이다. 입소기간은 일반보호시설의 경우 기존의 6개월의 기본기간과 1년 6개월의 1회 연장 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인보호시설은 기본 2년 이내로 하되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가 될 때까지 입소하고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들은 2년 입소 후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보호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소기간 연장 및 연장할 수 있는 특별 사유를 허용한 것은 피해자의 상황에 맞추어 퇴소의 시기를 보다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마련하여 쉼터 퇴소 후 피해자가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 지원이 한층 두터워졌다. 그러나 친족성 폭력피해자쉼터를 따로 두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주거공간, 학업지원, 일상지원 등이 장기간 필요한 것은 친족성 폭력 피해자의 특성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특성으로, 피해자-가해자 관계 유형에 따라 쉼터가 구분될 필요가 굳이 없기 때문이다.

### **피해 아동·청소년의 상담·치유프로그램 제공자 확대**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상담이나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곳이 '상담시설'에서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고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로서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한 상담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상담이나 치유프로그램이 의료적 관점으로 치우치게 될 우려가 있다.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관련 의무 확대**

보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 유치원장, 영유아보육시설장, 초 중

고등학교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가 있었다. 여기에 공공단체장이 추가되었으며 교육대상 또한 청소년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교육 실시 의무자는 교육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신설되었다. 교육 실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은 성폭력 예방 교육 지원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여야 할 의무와 성폭력 예방 교육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의무도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반성폭력 운동계는 성폭력을 줄이는 방안으로 공교육상 깊이 있는 인권교육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번 개정은 모든 국민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성폭력을 사회문화적으로 이해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 **성폭력 예방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의무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반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홍보영상이 지상파에 송출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는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송출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보호법에 기존 아청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신설한 것이다.

## 2

### 쟁점과 입장

군형법 상 추행죄 - 존재와 행위 사이에서 맴도는 차별과 혐오의 유령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양보다 질이다.  
성폭력 피해유형에 따른 보호시설의 구분이 최선인가?

### 대안읽기

쉼터 퇴소 이후의 삶을 위한 준비

### 프리즘 [성폭력과 유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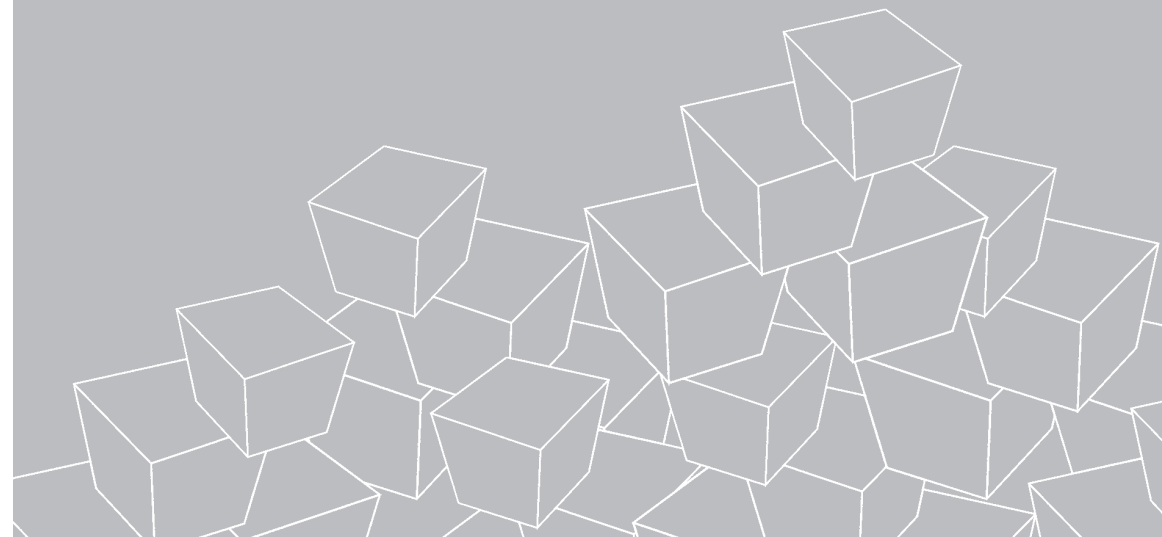
유명인, 관찰자, 성폭력

납작하게, 더 납작하게 - 통념 속에서 성폭력 사건을 재구성하기

유명인 가해자의 성폭력 사건 현장

### 성문화 읽기

나 홀로 떠난다는 것은? (성폭력, 여행, 등산, 괴담 등에 대한 죄담회)



## 군형법 상 추행죄\*

존재와 행위 사이에서 맴도는  
차별과 혐오의 유령

정율 | 동성애자인권연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2010년 11월 KBS 라디오 열린 토론에서 개최한 ‘군형법 92조 위헌성 여부’ 토론에 패널로 참여한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92조가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패널참여를 선뜻 승낙했다. 국방부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던 성신여대 정연주 법대 교수와 갈보리채플의 이요나 목사가 합헌 결정의 의사를 가지고 참여하기로 했다. 꽤 이른 시간에 방송국에 도착했다. 군형법 92조에 대해 찬성의사를 가지고 있던 그들을 마주한다는 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방송 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비슷한 시간에 도착한 이요나 목사의 악수제안을 소심하게 거절하는 것뿐이었다. 솔직히 손에 흐르는 땀을 들키기 싫었다. 짧은 방송이었지만 그들은 시종일관 ‘군형법 92조에 담긴 ‘계간’이라는 표현은 문제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성 간 성행위(그것이 합의에 의

한 것이든, 강제, 위력, 폭력에 의한 것이든)는 잘못되었다라는 말로 일관했다. 국방부는 군대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군 기강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요나 목사는 성경에서 언급한 죄라는 이유로 합헌결정이 나와한다고 주장했다. 맨얼굴에 침 뱉는 걸 그대로 참아내야 하는 듯한 모욕감이 들었다. 한참을 여의도 주변의 커피숍에 앉아 방송에서 했던 말을 되뇌며 그 모욕감을 씻어내려 애를 썼던 기억이 난다.

이후 2011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92조5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2002년에 이어 2008년에도 위헌 제정된 군형법 92조가 공개변론까지 진행되며 5년 가까이 논의가 진행되어왔지만 우리는 결국 합헌이라는 절망적인 결과를 받아야 했다. 방청석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헌법재판소 앞은 위헌과 합헌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결과를 기다리던 그 시간의 초조함은 한국교회가 이겼다는 만세소리와 함께 허무함과 분노로 끝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성적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 나에겐 어려운 법률용어보다 “기타 추행”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내용이 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헌법재판소는 기타 추행을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한동안 주춤했던 군형법 92조5에 대한 논쟁은 2013년에 다시 이어졌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의 성폭력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군형법 상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도 함께

\* 군형법 제92조5(추행)은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2013년 3월5일 군형법일부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군형법 제92조6(추행)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변경되었고 2013년 6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기된 것이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 남인순 의원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차례로 균형법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세 의원은 모두 균형법 제 92조5에 포함된 '계간' 조항이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남인순 의원안을 제외하고는 합의에 의한 성적접촉도 처벌할 수 있는 추행조항을 그대로 남겨두는 모순을 넘지 못했다. 남인순 의원은 추행조항 앞에 '그 의사에 반하여'라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합의에 의한 성적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폐지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옳았다. 균형법 92조5를 폐지하는 안을 상정하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92조5의 폐지 가능성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해당조항의 존치를 주장하며 '계간'조항이 '항문성교'라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미 폐지되었어야 할 균형법 92조5는 결국 3월 5일 계간이라는 말이 항문성교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었을 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폐지안이 처음부터 발의되었다면 어떠한 지 뒤늦은 아쉬움이 드는 순간이었다.

###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균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3월 14일 국회에서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국방부 군 사법 담당자로부터 국방부의 입장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늘 문서로만 접했던 그들의 입장을 처음으로 대면한 자리이기도 했다. 먼저 군 형법상 추행죄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들은 부대관리훈령을 통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군 특수성을 고려하고 군 기강을 지키고자 했을 때 '비정상적인 성적만족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합의에 의한 성적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군 위계질서에 큰 손상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심지어 사형

제도의 필요성에 빗대며 극단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균형법 상의 추행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데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는 안 된다? 그리고 균형법 추행죄가 폐지되면 군 기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 극단의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논리다. 이요나 목사가 그랬고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도 동성애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하고 학교에서 항문성교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기를 쓰고 막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균형법 92조 위헌결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을 무렵에도 '군에서 게이 된 내 아들, 에이즈 걸려 돌아온다'는 구호가 등장할 정도로 핵심은 동성애 확산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동성애는 국방부가 토론회에서 이야기했던 '비정상적인 성적만족행위'이자 헌법재판소 등에서 언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거나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 것이다. 성적 행위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가 될 성적행동인가 라는 기준은 그 행위에 대한 주체 간 동의여부이지 정상과 비정상, 도덕과 비도덕,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지 여부가 될 수 없다.

종교와 법에서 말하는 위협은 추상적이다. 합의에 의한 성적접촉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 행위를 비정상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다. 극단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군 기강과 군전투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다는 순간 차별은 시작된다.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균형법 92조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실증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조차 하지 않은 국방부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단서들

##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양보다 질이다.

백미순 | 본 상담소 소장

2012년 11월에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오는 6월 19일 시행 예정으로, 여성가족부는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작업 중이다. 이 개정안들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개정안 제7조의2)과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제8조의5 및 별표 3-2)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일선 현장의 경험에 배치되는 내용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우리 상담소를 비롯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개정안들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 중 성폭력전문상담원이 되기 위해 10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150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별표 3-2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특히 문제적이다. 여성가족부는 상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시간을 확대하겠다는 의도이지만, 이는 상담현장에서 상담원 양성교육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양질의 상담원 양성을 위해 효

은 결국 동성애 혐오에 기반한 추측일 뿐이다.

균형법 92조6 추행죄 폐지안은 국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계간이 항문성교라는 용어로 대체되면서 법리적 모호함은 더 깊어졌고 합의에 의한 성적접촉조차 처벌하겠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더욱 확고해졌으며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국방부는 92조6이 이성애자에 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유일한 법조항임을 부인하고 있지만 ‘동성애자’ 병사의 등장만으로도 어떤 성적행위를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워 전전긍긍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국방부 스스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균형법 92조6 추행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차별’에 맞서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다.

이 글을 마무리하고 난 뒤 민주통합당 민용철 의원이

균형법 일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균형법 92조6 ‘추행죄’를 ‘동성 간의 간음죄’로 변경하고

동성 간 합의에 의한 관계조차도

징역 2년 이하의 형벌로 처벌하겠다는 경악할 만한 법안이었다.

‘동성애 처벌법’은 수많은 성소수자들의 공분을 샀고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즉각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민용철 의원은 한 발 물러서 동성 간을 이성 간으로 확대해

법안을 다시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균형법 92조6을 폐지하기 위한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과적인 조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지 않은 것이다.

상담원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 제대로 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피해생존자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피해자들의 사건해결이나 치유의 작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이 상담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상담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본교육시간을 지금보다 50시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생각이다. 상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기본교육은 물론 상담현장에서 부딪히는 상황들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실습과 실습에 대한 평가, 상담원 간의 토론 등을 통한 지속교육, 그리고 장기적인 활동을 통해서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처우 등이 두루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교육이 각 교육시설에서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를 여성가족부가 잘 연구하고 감독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본교육시간이 2년 전 기준 64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된 이후, 몇몇 교육시설에서는 소수의 강사가 대부분의 강의를 담당하도록 하여 강좌의 내용마다 요구되는 전문적인 교육을 하지 않거나 의무수강시간을 정확하게 준수하지 않아도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였다는 사례가 들려왔다.

또한 상담현장에서 상담원에 대한 지속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도 지역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많은 상담소들이 개별상담에 대한 지속적인 슈퍼비전이나 사례연구를 체계적으로 하기에 열악한 인력구조와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전문가 인력풀이나 상담소간 지역별 네트워크 등을 마련해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 성폭력전문상담원의 자질향상은 상담원 기본교육시간 확대를 통해

서가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능동적으로 역할을 해야만 풀릴 문제이다.

교육시간이 150시간으로 확대될 경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될 우려도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일수록 상담원의 충원 자체가 어려운데, 교육시간 확대로 상담원 양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을 받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상담원이 되지는 않는다. 아이를 키우다보니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거나 우리 사회에서 왜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지 궁금해졌다거나 피해자들을 위해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소박한 참가자들을 교육에서 흔히 만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상담소와 같은 시설에게 이 교육은 상담원 양성이라는 의미 외에도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만나 성폭력이 발생하는 우리 사회문화에 대해 소통하고 성차별과 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높이는 기회였다. 교육시간이 150시간으로 확대될 경우 성폭력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교육 참여 기회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현행의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이 64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된 지 3년째 접어든다. 기본교육 체계가 안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난 2년에 대한 명확한 평가 없이 여성가족부가 이를 150시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을 위한 지원의 질을 높이고 상담원의 기본자질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와 일선 상담소가 공유하는 목표이다. 여성가족부가 일선 상담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바람직한 해법을 개정안들에 담는 것이 이 목표에 근접하는 지름길이다.

# 성폭력 피해유형에 따른 보호시설의 구분이 최선인가?

공명 | 본 상담소 부설 쉼터 열림터 원장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막고, 안전한 생활공간에서 안정된 생활과 다양한 지원(의료, 심리, 법률, 학교, 직업훈련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치유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으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22개가 설치 운영 중에 있다.

90년대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수가 적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구분 없이 피해자들은 모두 일반보호시설에서 생활하였다. 이후 광주를 비롯한 부산과 청주에 장애인 보호시설이 생기면서 장애인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현재까지도 3곳에 불과한 보호시설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 성폭력피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족들도 장애를 가졌거나 가정환경 등 주위상황이 열악하고 퇴소이후 재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일정기간 시설에서 생활하고도 퇴소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시설의 유형별 분류와 차등지원

일반 보호시설과 장애인 보호시설로 구분되어 있던 보호시설의 종류는 2009년 아동·청소년 전용쉼터(미성년 친족성폭력피해자 보호쉼터)가 설치되고 2012년 12월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면서 더욱 세분화 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시설과 신규 시설, 정부의 위탁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보호기간, 정부의 지원예산 등에서 차이가 나면서 동일한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에서 시설 간의 격차를 야기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유형별 분류의 변화〉

1994년~2009년	→ 2009년~2013년(6.18.)	→ 2013년(6.19.)~
일반 보호시설	일반 보호시설	일반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009년 여성가족부에서 신설한 아동·청소년 전용쉼터(2012년 법률개정으로 특별지원 보호시설로 명칭 변경. 이하 특별지원 보호시설)는 미성년 친족성폭력피해자가 만 18세까지 생활할 수 있고, 기존의 일반시설에는 지원되지 않던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학습지원비와 더불어 종사자의 인건비도 대폭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보호시설은 오래전부터 미성년 친족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역할을 해왔다. 각 시설 입소자중 친족성폭력피해자의 비율은 이미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열림터의 경우에는 80% 이상), 장애인의 입소 비율도 시설별로 차이는 있지만 약 30~40%이며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일반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 친족성폭력피해자는

기존의 입소기간인 최장 2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고 난 이후에도 학업이나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만 18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기존 시설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던 역할을 특별한 시설에서만 전담하도록 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 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2009년 정부에 피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와 학습지원비는 미성년 친족성폭력피해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정부지원을 요청했던 사항이다. 열악한 생계비는 차치하고라도 교통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등은 쉼터 생활인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만 이를 지원하고, 일반시설의 미성년 친족성폭력피해자에게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단지 예산 부족의 이유인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 시설분류가 아닌 통합지원으로 피해자 치유회복을 기대해야

성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은 피해자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형태와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물론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친족성폭력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아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피해회복에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다. 하지만 지원현장에서 만나는 성폭력피해자들은 친족성폭력 여부와 상관없이 유사한 후유증을 보이기도 해, 친족성폭력피해자만을 분리하여 별도의 지원을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오히려 시설통합이 다양한 성폭력피해자들이 소통과 공감을 통해 피해 후유증을 극복해 나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법률 개정의 필요

작년의 법률개정으로 인해 시설의 종류가 세분화 되면서 시설별로 입소 가능한 성폭력의 유형이 제한되고, 입소기간, 입소기간 초과연장 사유 등도 달라졌다. 이는 지역별, 연령별로 성폭력피해자의 시설 입소에 대한 선택의 폭을 좁게 만들고, 시설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 시설의 종류와 상관없이 미성년 성폭력피해자는 19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서 생활 할 수 있어야 하고, 특별지원 보호시설에만 적용되는 2년 이내에서 1회 입소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을 타 시설의 친족성폭력피해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장애인만 입소가 가능한 장애인 보호시설의 수가 적은 현 상황에서 여기에 입소하지 못한 장애등급경계의 지적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게 비장애인 시설의 보호기간을 적용하게 된다면 보호의 공백에 놓이는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입소기간 연장 시에도, 의사 소견서보다는 장애인 입소자의 일상을 보다 정확히 알고 있는 시설의 장과 상담원의 판단을 토대로 해야 한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입소자의 특성별 지원을 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시설을 세분화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의 양상에 따른 지원의 위계와 공백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특성에 따른 시설의 분류가 적절한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한다. 지역과 시설에 관계없이 어떤 곳에 입소하건 성폭력피해자는 동등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제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좀 더 신중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 쉼터 퇴소 이후의 삶을 위한 준비

여름 | 본 상담소 부설 쉼터 열림터 활동가

열림터에는 주로 10대부터 20대의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의 친족성폭력피해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최대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성폭력피해 치유와 함께 자립 준비를 하게 된다. 쉼터에 입소하는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주변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퇴소 후의 삶을 위한 체계적인 자립준비가 요구된다.

2010년까지는 쉼터입소자들에게 직업훈련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있었지만 2011년부터 이 같은 제도가 없어지면서 직업훈련과 관련된 것은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반 구직자와 동일하게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서 쉼터입소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노출시킬 위험이 커져 자신의 주민번호를 기입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시스템은 쉼터입소자들의 안

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얼마나 빈번한지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다행히 2011년부터 시설에서 일정기간 이상 생활한 뒤 퇴소하는 경우에는 퇴소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일시적이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지만, 쉼터 입소자들의 장기적인 자립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졸 구직자들의 취업난도 심각한 요즘 대학입학조차 고려하기 어려운 쉼터입소자들의 취업은 그야말로 험겨운 상황이다. 등록금과 수업료 등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대학진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여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쉼터입소자들의 구직활동은 대졸자격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임시직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열림터의 한 생활인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몇 달간의 고시원 월세비용 정도만을 마련하여 퇴소를 준비한 적도 있었다. 자립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에 매우 열악하지만 이런 방식의 자립이 현재의 상황이기도 하다.

물론 장기적으로 꾸준히 관심과 흥미를 가지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는 노력도 계속 하고 있다. 열림터는 매년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생활인들은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자신들의 적성에 맞거나 흥미가 생기는 분야를 찾게 되기도 한다. 비폭력대화, 요가, 공예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관심이 생겨 공부를 하게 되고 자격증 취득을 하면서 진로를 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쉼터입소자에게는 사회생활의 중간단계를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큰 도움이 된다. 한 예로,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던 생활인

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다. 쉼터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진료를 해주 시는 한의사가 자신의 한의원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제공한 것이 다. 크게 어려워 보이는 일은 아니었지만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입소자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르바이트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의원이라는 낯선 공간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생활인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공간에 대한 믿음, 대면하는 사 람들에 대한 신뢰를 쌓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했다. 다행히 생활인의 두려 움은 조금씩 줄어들면서 아르바이트에 익숙해져 갔다. 이러한 과정은 성폭 력피해생존자의 재사회화에 뜻을 모아주고,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 후원자의 전폭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외에도 자연스럽게 쉼터라는 안정된 공간에서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 을 통해 그 동안 성폭력피해로 인해 신경 쓰지 못했던 자신들의 꿈을 다시 상기하게 되고 배우고 싶던 분야의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를 보기도 한다.

쉼터입소자들이 진로를 찾고, 자립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피해자 쉼터는 성폭력피해생존자들에게는 마지막 피난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처지에서 자립을 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쉼터에 거주하는 성폭력피 해생존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자원을 지원하는데 뜻을 함께 하는 개 인 및 기관들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 { 유명인, 그대의 이름은

사전적 의미로 유명인(有名人)이란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을 뜻한다. 매스미디 어의 영향으로 유명인의 일거수 일투족은 대중에게 노출되고 있다. 특히 연예인, 검사, 정치인, 기업가, 인권운동가, 고위공무원 등 유명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대중들의 관심 과 언론의 무차별적 보도를 통해 가십거리로 전락한다.

이번 프리즘에서는 유명인과 성폭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유명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대중의 시선을 분석했다. 토리는 유명인의 개념 분석을 통해 유명인 성폭력 사건의 숨은 시사점을 밝히고 유명인은 유명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미디어의 반응을 통해 드러 나는 성폭력 통념을 분석한다. 란은 성폭력생존자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유명인 성폭력 사건에서 나타나는 2차 피해에 대해 살펴본다.

## 유명인, 관찰자, 성폭력

토리 | 본 상담소 사무국장

유명인을 손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대기업 회장, 연예인, 정치인들을 떠올린다. 이들은 재력과 함께 그 시대와 통하는 명예를 가졌다. 이 들처럼 유명해지려면 상상하기 힘든 많은 자원과 힘을 얻는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대중적인 유명인사 외에 '나'에게 특별한 유명인도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의 직업, 관심사, 내가 사는 지역, 주변사람들의 생활반경에 따라 다른 유명인의 범주를 갖고 있다. 특정 공간에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거나 권력이 집중된 사람이 자연스럽게 유명인이 되기도 한다. 이 유명인들은 그 공간의 욕망과 현재를 반영하는 인물들이다. 유명인의 수와 범위는 언론과 미디어 산업의 변화에 따라 점점 늘어났다.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참여자와 같은 주목할 만한 사연을 가진 인물들이 종종 새로운 대중적인 유명인으로 등장한다. 인터넷과 모바일기기 사용 확산 이후 SNS가 시민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파워트위터리언'이나 '파워블로거'도 새로운 유명인사로 주목받고 있다.

### 유명인과 관찰자들

사람들은 누군가의 삶을 화젯거리로 삼아 대화하는 것에 익숙하다. 특히 유명인의 삶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관음증과 구별되지 않을 때가 많다. 유명인의 일상을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대중의 욕구는 때때로 유통되는 정보를 사실관계나 사생활 침해 여부를 불문하고 확대 재생산시킨다.

유명인들은 자신의 유명세와 명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관찰자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기도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유명세와 함께 따라오는 명예는 대중들의 이상화 된 기대가 깨지면 사라진다. 사람들은 정치인이나 공직자와 같이 특정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직업을 가진 유명인들을 비판하고 평가하거나 심판하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다.

### 소셜네트워크시대 유명인들의 일상

SNS는 마치 사람들의 말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거대한 호수와 같다. SNS의 적극적인 이용자들은 지속적으로 타인과 네트워킹을 시도하며 소셜네트워크안에서 자기 영역을 확장해나간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유명인들의 태도와 유명인을 관찰하고 유명인과 어떤 방식이든지 관계 맺고 싶어 하는 관찰자들의 욕구가 만나 유명인들이 유명세를 확장하거나 이용하는 방식도 점차 변화되고 있다. 유명인들은 SNS 안 행동 하나하나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 때때로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은 SNS를 이용해서 대중의 관심에 적극적으로 부응한다. 한편 SNS 안에서 유명인 스스로 언급한 이야기나 그의 관찰자들이 제공한 정보가 계속 유통

되므로 유명인들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다.

과거 유명인 당사자가 유명세를 의식하는 모습은 마치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의 슈퍼히어로처럼 일상에서 자신의 초능력을 감추는 겸손함이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미란다처럼 감추고 싶은 사적 갈등마저 드러내야 하는 유명세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전형적이었다(물론 재현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젠더나 직업에 따라 이런 갈등 양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 이에 비해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보여주는 ‘아이언맨으로서 살아가기’는 최근 SNS 시대의 유명인들의 삶에 가깝다(극중에서 아이언맨은 과학적으로 신비한 힘과 재력을 동시에 갖춘 극대화된 ‘남성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재벌 기업가가 변신한 슈퍼히어로이다). 그는 애써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과 아이언맨으로서 대화하고 시민들과 언론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 ‘성폭력’이 뒤흔든 유명인의 삶과 소셜네트워크시대 관찰자의 불안

만약 ‘아이언맨’과 같은 한 사회의 유명인이 성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우선 내가 관찰해오던 익숙한 누군가가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거나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 이때 유명인에 대한 지지, 믿음, 실망을 가르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관찰자인 ‘나’의 성폭력에 대한 지식, 경험, 언론의 보도이기 때문에 이 당황스러운 사건을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열쇠는 관찰자가 쥐고 있다. 유명인사에게 느끼는 친밀함의 정도, 권위의 무게, 성폭력이 맞는지 판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모여 관찰자의 머릿속은 복잡한 국면을 맞이한다.

유명인의 성폭력은 한국 사회의 성문화에서 익숙한 성적 행위들이나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성폭력으로 사건화 되는 것이 관찰자들에게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관찰자들은 피해자편에서 서기보다 가해자에게 관대해진다.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은 나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성폭력과 관련된 파편화된 이미지들이 한 곳에서 만나는 상황이기 때 오히려 내가 그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 지금 나의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신이 관찰했던 무수한 유명인들과 나의 삶이 성폭력과 동떨어지지 않다는 사실을 되돌아봐야 한다. 유명인 성폭력 사건에서 곧잘 잊히는 사실은 성폭력 가해와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때론 성폭력 행위를 모르고 지나칠 만큼 한국사회의 성문화가 성폭력 발생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은 한 순간의 잘못이나 범죄로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해 관계의 맥락과 그 사이에서 나타난 성의식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서는 유명인으로서 갖는 권력이 성폭력 발생 원인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이 간과된 채, 피해자의 꽃뵤여부에만 집중하게 된다. 시민들이 연예인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드러내는 언론의 2차 가해에 분노하기보다 ‘알 권리’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심판에 주목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연예인, 정치인, 파워트위터리언 같은 유명인들의 이미지와 행동이 그 사회의 욕망과 윤리, 가치 등을 대변한다면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한 사회의 문화와 고질적인 문제들도 엿볼 수 있다. 그들을 주목할 만한 존재로 만들고 그들이 성장한 모든 곳 바로 이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와 내 주변의 모습과 우리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그들이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성의식을 비롯한 잘못된 문화들을 극복하며 살 것을 기대하고 그들이

지켜야할 윤리를 따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2013년 봄에 한국사회가 주목했던 유명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은 한국 사회의 성의식을 들여다보는 거울이었다. 유명인으로서 가진 권력우위의 상황에서 그들이 행한 성폭력은 그들의 관찰자였던 나 혹은 내 주변 성폭력의 발생 맥락과 다르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 납작하게, 더 납작하게

### 통념 속에서 성폭력 사건을 재구성하기

유영 | 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연일 대서특필되는 성폭력 사건들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연관 검색어와 보도기사에 대한 의견을 담은 댓글들과 온라인 서명 운동 페이지를 훑어보고 나면 보도된 사건의 자초지종을 쉽게 알 수 있다. 사건의 진행 상황은 기자들에 의해 실시간으로 포털사이트에 ‘뜨다.’ 촌평에 논평이 가세하고 하나씩 덧붙여진 댓글과 스크랩, SNS상의 리트윗과 ‘좋아요’가 만들어내는 여론은, 한 성폭력 사건의 진행을 쪽대본 드라마 결말을 바꾸듯 바꿔내기도 한다.

### 성폭력 사건을 납작하게 만들기

언론을 통해 나타나는 성폭력 사건의 서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야기가 교차하는 성폭력 사건 안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맥락에 따른 수많은 이야기들이 실뿌리처럼 어지럽게 뒤엉켜있다. 언론을 통해 모든 공개된 이야기들은 전달자가 재구성한 결과물이다.

이야기를 팔려는 목적을 가진 이들은 잔뿌리는 제거하고 너무 큰 것은 토막 쳐 무게를 달아 포장한 뒤 시장에 내놓는다.

이렇게 나온 성폭력 기사들의 서사는 대개 비슷하다. “짐승” 같거나 “악마” 같은 가해자가 “힘없는” 피해자를 “노리게” 삼아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하고, “짓밟고” “유린”한다. 그렇지 않은 성폭력 사건들은 사건 외의 이슈로 비화되거나 충분한 피해자다움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매장, 혹은 공격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맞는다.

이들 이야기는 철저히 ‘일반’적인 ‘상식’에 의지해 살아가는 ‘일반 대중’을 독자로 상정하는데, 보도되는 성폭력 사건 속에서 가해자는 ‘일반 대중’과 완전히 분리되는 괴물이고, 피해자는 독자인 ‘나’와 관련 없이 가련한 인물로서 대상화되어 전형성을 띠게 된다.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구체화되어 작동하는 것이다. 이는 서술되는 성폭력 사건과 독자 간의 거리감을 충분히 유지시키고 성폭력 사건이 기사의 독자인 ‘나’의 문제일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성폭력은 나와 거리가 멀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된다. 성폭력 사건의 정황은 현실감을 부여하고 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열거되는데 이는 사건을 익숙한 서사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동감을 부여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평소 행실과 품성에 대한 주변인들의 평가 등이 뒤섞여 뿌려지기도 한다.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사건다워야’ 하기에, 그 속에는 오로지 피해자다운 피해자와 가해자다운 가해자만이 존재할 것이라는 환상을 언론과 대중이 공유한 채 끊임없이 흥미로운 이야기로서 재생산된다. 우리는 이 만들어진 환상 속에서 맥락이 풍부하며 수많은 쟁점이 쏟아지는 하나의 입체적

인 사건이 바짝 짜부라져 평면화 되는 광경을 목격한다. 이렇게 납작해진 성폭력 사건이 연일 포털사이트를 장식하지만, 이미 여기에 있는 것은 성폭력 사건이 아니다. 납작해질 대로 납작해져 눈앞에 벽지처럼 발라진 채 자극적인 이야깃거리로 압축된, 어제와 내일의 이야기와 비슷한 오늘자 통념일 뿐이다.

### 성폭력 사건과 유명인

언론과 여론이 온라인의 동시성을 매개로 성폭력 사건을 환상적으로 재생산해내는 과정이 표출되는 또 다른 사례는 사건 당사자가 유명인사인 경우다. 최근 검사, 국회의원, 연예인, 교수, 언론인 등의 남성들이 가해자로 등장하는 성폭력 사건들이 언론에 쏟아졌다. 2009년에는 여성 연예인이 자신에게 가해진 성폭력을 유서로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여성 연예인들이 자신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이 유포되는 성폭력을 겪은 일도 있었다.

그러나 앞서 서술하였듯 언론의 성폭력 사건으로의 범주화는 대중의 환상이 용인하는 영역 내부에서만 이루어진다. 특히 유명인이 가해자인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대중에 의해 공개적으로 피해자다움을 검증 당한다. 만일 피해자 상에 걸맞지 않은 피해자라면 그가 겪은 일은 성폭력 사건이 아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을 받는다. 따라서 가해자 측은 이러한 통념을 적극 이용해서 공격적인 언론플레이를 펼친다.

어떤 네티즌들은 공명심을 발휘해 ‘신상 털기’로 피해자를 심판하려 든다. 그들의 ‘신상 털기’는 이미 공개된 가해자의 가해 사실 이면에 반드시 무엇인가 더 있을 것이며,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진실에 접근하는 길이라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때문에 마치 중립적인 듯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이들의

‘수사’는 대개 ‘아마도 피해자가 가해의 구실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성폭력 피해자 유발론이 출발점이다. 이 모든 과정은 다시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 되고, 이를 토대로 여론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해결됨으로서 보다 편안하고 익숙한 서사의 이야기로 진척되어 간다. 이제 논란의 중심은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가해자 비난에서 피해사실의 의심으로 옮겨 가게 되는 것이다.

최근 불거진 검사와 남성연예인 성폭력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사진을 비롯한 신상정보가 유통되었다. 특히 대중적으로 이미지가 좋은 남성 유명인이 가해자로 밝혀지면, 그 피해자는 여지없이 ‘꽃뱀’으로 의심받는다. 하지만 가해자의 평소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달라지는 것은 가해가 사실로 드러났을 때 대중이 가해자에 대해 보이는 태도 일 뿐, 피해자에 대한 억측과 2차 가해가 거두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문제는 온라인 공방이 문제 해결 과정에만 단순히 개입한 후 간단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가령 법원에서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중은 이미 ‘꽃뱀’으로 의심받은 피해자의 명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잘 짜인 환상 속의 결말로 흘러가지 않은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잊어버린다. 혹은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해를 당할 만 했다’거나 ‘아무래도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 짓기 까지 한다.

### 일상의 성폭력 사건과 통념

온라인 공간에서 회자되는 유명인 가해자는, 익명의 ‘괴물’ 가해자보다 친근한 존재이다. 유명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단순히 현실과 유리된 뉴스 속 괴물 가해자를 목격한 충격보다 나와 가까운 인물이 가해자가 되었을 때의 충격과 난감함에 보다 가까워진다. 대중에게 익숙한

접해왔던 유명인이 당사자가 된 성폭력 사건은, 결국 익명의 성폭력 사건에서 표상되는 가해자다움과 피해자다움이 일상의 성폭력 사건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 보여주는 단초가 된다.

예측불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성폭력 사건을 일상에서 갑자기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은 성폭력 사건을 도식화하고 쉽게 ‘심판’한 뒤 잊거나 거리를 두고자 한다. 데이트 성폭력, 직장내 성폭력, 친족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이 친근한 관계나 지인에 의해 발생함에도 그 사건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다.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가”로 가해자를 비일상적 존재로 표상해버리는 단정적 반응과, “그렇게 좋은 사람이 그럴 리 없다”며 가해사실을 믿지 않는 가해자 지인의 반응 속에서 피해생존자의 복잡한 서사는 축소되며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결코 단순하지 않은 성폭력 사건의 서사를 몇 가지 협소한 틀 속으로 끼워 맞춰 축소시키는 것은, 익숙한 인식에 기대어 복잡한 사건을 빠르고 쉽게 납득한 뒤 회피하고자 하는, 가부장적 통념이 내재된 주체의 내부적 저항이다.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가해사실의 증명에서 피해사실의 증명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성폭력 사건 외적인 요소로 논점이 이탈하는 것을 그러한 저항의 결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익명성과 동시성이라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에 힘입어, 관계에서의 번거로움과 책임에서 벗어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편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온라인 설전의 책임은 결코 다른 누구에게 있지 않다. 우리가 일 상에서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반응이 극대화될 것일 뿐이다. 중립이라는 가치를 수호하는 듯이 성폭력 사건을 쉽게 ‘수사’하려 들고 소문을 만들어 내며, 피해자에게 낙인을 찍고 쉽게 말을 만들어내어 발생하게 되는 2차 가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수많은 댓글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 직접적

## 유명인 가해자의 성폭력 사건 현장

란 | 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으로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 우리 사회는 기억한다는 행위에 저항하고, 우리는 성폭력 사건을 잊기에 바쁘다. 이렇게 납작하게 축소된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은 본래의 무게를 잃고 쉽게 감추어진다. 하지만 감추어진 성폭력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어쩌면 ‘감추기’는 ‘용인’의 다른 말이 아닐까.

상담소에서 활동하면서 최근 성폭력 사건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사실 이전보다 성폭력 사건이 더 많아진 것이 아니라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더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특히 가해자가 유명인인 경우 성폭력 사건은 언론에 의해 실시간으로 보도된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기사에 언급된 내용이 블로그나 SNS를 통해 재구성되어 ‘사실’인 것처럼 알려진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들은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결합되어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다.

유명인 성폭력 사건 지원 현장에서 만나는 피해자들이 겪는 유사한 경험은 유명인 성폭력 사건에서 나타나는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 유명하다는 것이 위력으로 돌변하는 현장

유명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대체로 유명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신기함과 평소에 가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호감 때문에 만남에 응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유명인의 이미지를 평소 성격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가공된 단편적인 이미지일 뿐이다.

언론을 통해 가공된 유명인의 이미지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이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가진 유명인은 마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피해자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이런 생각은 되려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를 유발했다는 깊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사건 내용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는 다수 대중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무언가를 노리고 가해자에게 접근하였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런 의심 섞인 관심은 자연스레 2차 가해로 연결된다.

### 성폭력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려지는 현장

유명인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는 너무나 쉽게 피해자의 정보가 대중들에게 노출된다는 점이다. 성폭력 피해가 '사건화'되는 순간부터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데 성폭력 가해자가 유명인일 경우 피해자의 정보는 더 빨리, 더 많이 노출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를 '사건화'하기를 꺼리게 되는데 예컨대 고소를 주저하거나, 법적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사실을 축소해서 진술하거나, 재판까지 가더라도 주변 시선 때문에 합의하여 재판을 종결하는 선택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이런 성폭력 피해자의 선택이 오히려 가해자의 성폭력 가해행위를 두둔하는 근거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성폭력 피해가 사실이라면 왜 고소를 하지 않지?', '처음하고 말이 점점 달라지는게 이상하지 않아?', '합의할 줄 알았어', '돈 때문에 했네' 등 성폭

력 피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대중들의 반응은 성폭력이라는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다른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고소를 주저하게 만드는 사회적 통념을 재생산한다.

이에 반해 유명인 가해자는 성폭력 피해자가 개인정보 노출의 위협으로 주저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모욕, 명예훼손 등의 역고소로 맞대응의 수위를 높여 성폭력 피해자 스스로 고소를 취하하게 만든다. 소위 말하는 '언플(언론플레이)'도 유명인 가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 1차 가해는 사라지고 2차 가해가 난무하는 현장

유명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성폭력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2차 가해이다. 성폭력 피해가 사건화 되면서 유명인인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넓은 관계망의 사람들이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2차 가해는 시작된다. 가해자가 그럴 리가 없다는 반응부터 피해자의 이전 연애 관계나 행실 등 성경력에 대한 언급까지 실시간으로 피해자에게 전달되고,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2차 가해가 이뤄진다. 이런 2차 가해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는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대인공포를 경험하거나 외부 출입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복잡하고 다각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1차 가해자보다 2차 가해자에 의한 피해가 더 크게 남으면서 사건 해결과정은 더욱 어렵고 복잡해진다. 피해자는 위축 또는 고립되고 지속적으로 양산되는 2차 가해자를 상대하느라 원래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던 방향에서 멀어지기 일췌이다.

## 같지만, 또 다른 차이의 현장

성폭력 피해 경험은 동일해 보이는 경험이지만 또 다른 차이의 경험이다. 유명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유사한 경험을 겪지만, 다른 성폭력 피해자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한다. 대부분의 성폭력의 서사는 유사하고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구조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사실은 성폭력 피해를 '사건화'하여 해결하는 과정에 깊숙하게 작용한다. 가해자는 유명인이라는 위력을 사용하여 성폭력을 하고, 피해자가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악용하고, 주변인을 통한 2차 가해를 더해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위축하게 만든다. 똑같은 현장이지만 유명인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차이'의 현장이다.

## 홀로 떠나는 여성들

구성 | 여름, 유영, 토리, 배, 정희  
정리 | 배, 토리

혼자 무언가를 하는 여성들이 있다.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영화를 보고 중년 아저씨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판을 벌이는 국밥집에서 온갖 시선을 받으며 밥을 먹기도 한다.

이제 더 이상 홀로 무언가를 즐겁게 하는 여성들이 드문 존재가 아니지만

홀로 있는 여성이 습격당한 도시 괴담들은 그녀들을 지속적으로 불안한 존재로 만든다.

우리는 인터넷에 떠도는 도시 괴담과 최근 발생한 인도 집단성폭력 사건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 것만 같았다.

이런 괴담들은 비현실적일 만큼 비일상적인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겁을 주곤 한다.

우리는 좌담회를 통해 여성 홀로 떠나는 여행과 도시괴담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으로서의 경험들을 얘기해보고자 했다.

## 괴담 속 여성들

배 어떤 사람은 겁 없이 많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혼자서는 여행을 떠나지 않거나 안전한 곳만 다니기도 한다. 이 얘기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활동가들도 다들 여행에 대한 생각이 달랐

다. 우리를 이렇게 규정짓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각자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보고 싶다.

**유영** 여행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면서 괴담을 얘기하고 싶었다. 내가 알고 있는 괴담은 가장 성공적인 도시전설이라고 하는데, ‘중국 여대생 콩팔 적출 사건’이라고 신문 기사에도 나왔다. 이 괴담의 원본은 미국 남성이 출장을 갔는데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 일어나니 얼음이 가득 찬 욕조였고 벽에 빨리 119에 전화를 하라는 메모가 있었고 전화를 해보니 119 안내원이 콩팔이 하나가 사라진거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재밌는게 이 이야기가 아시아권으로 넘어왔을 때는 피해자가 홀로 여행을 간 여대생으로 바뀌고, 있을 법한 이야기처럼 입소문을 타서 언론에 보도가 된 거였다. 동남아시아로 신혼부부가 여행을 갔는데 아내가 혼자 나간 다음에 돌아오지 않아서 몇 년 뒤 찾아냈는데 팔다리가 잘린 채 서커스단에 있더라는 괴담도 있다. 또한 학창시절에도 이런 괴담들이 있지 않았나? 여고에서는 어떤 여성이 걸로 떨끔해 보이는 남성과 원나잇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질 안에 뱀이 있었다는 괴담도 들어본 적 있다.

**여름** 그 괴담은 나도 들어본 적 있다. 생리대에서 바퀴벌레 알이 나와서 몸 안에 부화했다는 얘기도 유명하지 않나. 그래서 생리대 살 때마다 걸봉지가 뜯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곤 했었다.

**유영** 괴담을 듣고 나면 ‘아 나는 원나잇 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혼자 다니지 말아야 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 괴담 속 여성들은 언제나 처벌 또는 피해를 입는다.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투영된 괴담들이 몸을 통제시키는 역할을 하곤 한다.

**토리** 작년 말 공단이 많은 지역에 공동체 젠더감수성 주제로 강의를 갔었다. 강의에 여대생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 지역에 이주노동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다. 그런데 실제로 성폭력을 경험

한 사례를 얘기할 때는 한국인 남성에게 의한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에 의한 성폭력이 많다더라’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한다는 건 그 지역 특유의 괴담인거다.

**여름** 그런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 뉴스를 통해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은 괴담처럼 유포된다. 수원살인사건이 주목받았던 것도 지하에서 살을 도려내고 이런 이야기가 딱 괴담에 나올법한 사건이었기 때문인데 이를 보도한 언론의 방식은 정말 자극적이었다.

### 화내기가 쉽지 않다, 왜?

**토리** 제주 올레길 사건이 종종 혼자 여행하는 언니들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 같다. 그 때 가해자가 했던 진술 중에 그런 진술이 있었다. 처음에는 성폭력을 하려고 접근한 게 아니고 무언가 물어보려고 접근을 했는데 그 여성이 불친절해서 죽었다는 것이다. 우연히 여행 중에 누군가 내게 다가왔고 내가 대답을 잘 안했더니 날 잡아가서 죽였다는 것 아닌가. 괴담과 비슷한 얘기다. 난 가해자의 말이 진실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 여성이 나를 화나게 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진술이라고 생각했다.

**유영** 맞다. ‘왜 여자애가 친절하지 않나, 친절하지 않아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서사를 만든 건데 문제는 그러한 서사가 받아들여진다는 거다. 하루는 동거인이 술을 먹고 귀가를 했는데 문을 제대로 안 닫고 들어온 거다. 나는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구세요?” 이런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고 남자 목소리가 웅얼웅얼 들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알아보니까 윗집 남자가 우리 집 문이 열려 있기에 문을 닫아주려고 부스럭 거렸다고 했고 그걸 보고 동거인은 놀랐던 거다. 그런데 우리가 한 얘기는 이거였다. 왜 동거인은 윗집 남자가 집

문을 돌리는 상황에서도 “누구세요?”라고 물었냐는 거다. 친절하게.

**토리** 나는 제주도 게스트 하우스를 갔다가 무서운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 게스트하우스는 크루 무리가 있어서 2,30대들이 같이 묵는 곳 이었는데 나는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곳 운영자가 다음 날 크루들과 같이 한라산을 등반할건데 같이 가겠냐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다음날 새벽에 같이 게스트하우스의 차를 타고 갔는데 중간에 다들 내리는 거다. 알고 보니까 한라산 등반을 가기로 한 사람들이 전날 다들 술을 마시고 늦게 자서 등반을 취소했는데 나는 전혀 몰랐던 거다. 나는 혼자서 한라산에 갈 생각이 없었고, 한라산까지 태워주는데 만원정도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약간 화를 냈다. 그래서 중간에 차에서 내렸고 올레길로 갔다. 한참을 걷다 보니 무섭다는 생각을 했다. 운전한 사람이 험악해 보이는 외모의 남성이었는데 그런 사람과 싸운 것도 겁이 났고 혼자 내린 것도 겁이 났다. 한참을 걷다보니 도로에 사람도 차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봉고차가 보였고 변호관을 보니 나를 내려준 그 차였다. 그 차는 달리던 걸 멈추고 내 뒤에 서서 한참을 출발하지 않았다. 갑자기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뛰었다. 뛰어서 그날로 짐을 싸서 아는 분의 집으로 숙소를 옮겼다. 환불도 안 되는 곳이었는데 자초지종을 물어도 대답도 안하고 그냥 옮겼다. 내가 변호관을 잘못 외웠을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는 정말 겁이 났다.

**배** 얘기도 안하고 그날로 숙소를 옮겼다면 정말 무서웠던 것 아닌가. 위협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보통 그럴 땐 감이 맞는거라고 하는 것 같다. 내가 화를 내도 상대방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으면 할만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과하는게 당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복수할거란 두려움이 생기면 화도 못내는 것이

다. 화내기 전에 항상 내가 화를 내는게 맞는지 생각하고, 참았어야 하는지 계속 걱정하고, 아니면 아예 화내는 마음을 접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다.

## 여전히 따가운 시선들

**여름** 드라마 <직장의 신>에서 비정규직 ‘미스김’이 점심시간에 매일 혼자 밥을 먹는다. 그걸 보고 남자주인공인 ‘장규직’이 “여자가 혼자 밥 먹고, 여행 가고, 영화 보기 시작하면 볼썽 다 본거다”라는 대사를 한다. 지상파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 마초적 시각을 대표하는 대사다.

**정희** 나는 혼자 여행을 진짜 많이 다니고 히말라야도 가이드 없이 혼자 갔다. 그런데 외국인 남성들은 나를 보고 격려를 진짜 많이 해주었다. 넌 할 수 있어, 너는 강한 여자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다. 혼자 여행을 할 때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내가 처음에 세계 일주를 했을 때 굉장히 짜증났던 남자애가 있었다. 호주에서 8년간 살던 한국 남자애였는데 내가 이제 돈을 모아 세계 일주를 할 거라고 하니까 ‘내가 그런 여자를 호주에서 한 명 만났는데 진짜 대책 없는 것 같다. 나이가 서른 쯤 되면 정착할 준비를 해야지 어디 여행갈 생각을 하냐. 약간 불쌍한거 같다’더라. 그 순간 나는 멘붕이 오는 거다. 편견일 수도 있는데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만난 한국 남자애들은 다들 하나 같이 자기 딸은 혼자 여행 보내지 않겠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다. 너 근데 여행하면서 멋있는 여자들 많이 보지 않았어? 만났다고 한다. 하지만 내 딸, 내 여자 친구는 안 된다.

**배** 매 순간 사람이 아니라 여성으로 보는 시각이 무섭다. 여자는 위험하고 혼자서 안돼. 여자 혼자서는 불완전한 존재니까. 이런 시각, 사실 사

고는 어느 순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건데 항상 여성은 훨씬 더 위험하고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걸로 여겨진다.

**여름** 외국인 남자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었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좋게 보이지 않는다. 격려가 필요한 약한 존재로 보고 애쓰는 시각이 있는 거다.

**토리** 여자가 혼자 여행을 다니면 꼭 물어보지 않나. 괜찮니, 안 무섭니, 위협하지 않아? 여자가 혼자 다니는 것을 너무 특별하게 보니까 걱정을 한다거나 치켜세워준다거나 두 개 중 하나로 대한다. 둘 다 기분 나쁜데. 하하하

###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넘어

**여름** 나는 숙박을 해야 하는 긴 여행은 잡지 않는 경우가 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안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계획조차 안 잡기도 한다. 의식하진 않지만 항상 벌어질지 모르는 사건에 대한 방어를 하고 있는 거다. 예를 들어 산에 갈 때도 가까운 산을 가지 멀리 있는 산을 가는데 계획하지 않는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알았는데 내가 평일에 산을 가지 않는 것도 사실은 이런 두려움 때문이다. 매일 출근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평일에 산에 잘 오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 산에 어떤 사람들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이유로 평일에는 산에 안간다. 이런 것들이 내 일상에 되게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억울했다. 내 활동 반경에 대해서 항상 뭔가 대비를 하고 있었다.

**토리** 여행을 계획할 때부터 안전한 숙소를 찾고, 이런 게 똑같은 여행이어도 여성들이 하는 여행은 참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경험할 수

있는 여행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마구간이든 교회든 잘 수도 있지만 그런 시도도 안 되고 숙박비가 많이 드니까 식비를 줄여야 하고.

**여름** 너무 겁내지 말고 혼자 여행을 시도해보라는 말도 많이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겁쟁이고 바보 같아서 안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고민이 단지 내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걸까? 이렇게 수많은 여성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단지 네가 용기를 내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방식은 해결이 아니라고 본다. 나는 안전하게 여행을 경험하고 싶고, 위협받고 싶지 않은 이런 욕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게 풀리지 않는 문제이다.

**배** 그래서 제주도 올레길에서는 이후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

**유영** 정말 궁여지책이다. 안전을 위해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느낌. 올레길이 인기를 얻었던 이유를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어이가 없다.

**토리** CCTV가 진짜 사람들의 요구였다는 게 더 대단하다. 혼자 일찍 떠나지 말고 동행이랑 떠나라는 것도 안전의 팁이었다. 안전 문제가 되면 자유롭고자 떠난 여행지에서 다시 몸의 통제를 양보해야한다는 상상력밖에 없는 것 같다. 인도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니까 해외여행을 가는 여성들에게 왜 가려고 하나, 무조건 가지 말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정희** 그런 반응이 어이가 없다는 답론이 우세하면 좋겠다. ‘그게 무슨 상관이나’, ‘왜 여행지 성폭력이 다른 사건 보다 더 이슈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등. 재미있게 여행한 여자들 얘기가 많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훨씬 많아지면 좋겠다.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는 어디서나 같을 뿐이니까.



# 3

생존자 말하기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 그렇게 꿈을 꾸다.

-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북콘서트를 보고 나서

성폭력과 사람들

엄마에게 쓰는 편지

사례연구

돈만 있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 그렇게 꿈을 꾸다.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북콘서트를 보고 나서

한별

내가 처음 성폭력을 당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그 때는 성폭력이 뭔지 몰랐고, 내가 겪고 있는 것을 잘 몰랐다. 대학생이 되어서야 학교 동아리의 아는 언니에게 처음 이야기를 했고, 아는 동생의 이모인 학교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재혼을 하셨다. 우리 가정은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화목했고, 살 것은 사고 외식도 자주 했다. 가족들과 배드민턴을 치기도 하고 놀러가기도 하는 단란한 가정이었다. 성폭력을 당하기 전까지는 괜찮은 가정이었고, 또 성폭력 이 시작된 후에도 그것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아버지가 용돈도 잘 주시고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학교도 데려다 주셨다. 그렇게 좋은 기억들이 남아있다.

기독교인인 나는 교회에서 “원수를 용서하라.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기에 성폭력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분노를 가졌음에도 항상 용서, 용서를 외치며 성폭력을 견뎌냈다.

나는 마치 내 잘못인양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용서를 외치며 진짜 용서가 아닌 가짜 용서를 하고 있었다. 진짜 용서란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 벌을 받게 하고 그 잘못을 완전히 뉘우쳐야 가능한 것일 텐데 그걸 미처 몰랐고, 나만 괜찮으면 되겠지 라는 생각에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살았다. 그건 가짜 용서였다.

난 집을 나올 용기나 자신도 없었고 자립할 능력도 없었다.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걸 안 될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도 시도를 하나보다.

집을 나올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들과, 교회 분들과, 아는 언니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과 헤어져야 할 텐데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고민도 많이 했다. 집에서 나오기 전 날까지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는데도, 난 집을 나올 자신이 없었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집을 나오고 나서도 ‘내가 결국 질렸고 집을 나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후회도 되어서 감정이 복잡했다. 정말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용기를 냈지만 너무 외롭고 견디기 힘들었다. 다시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하루하루 견디다 보니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

아버지를 신고하고 집을 나오면서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 계획이 다 무너진 느낌이어서 완전히 내가 바닥으로 내려간 것 같았다. 졸업하면 집을 나올 생각이었고, 자유롭게 하고 싶었던 것도 많이 계획해 두었었다. 친구들과도 더 깊이 있는 우정을 나누고 싶었고, 교회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도 싫었었는데, 헤어져야만했다. 집은 진흙탕 같았다. 나는 진흙탕을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서 힘들었다.

그 후에 신고를 하고 나서 난 정말 많이 울었고 죄책감도 들었다. 성폭력은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용기를 내어서 신고한 것이었는데도 말이다. 혼

란스러웠고 양가감정도 들었다. 아버지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 는 알았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 한 켠에서는 부담이 되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북콘서트에서 독자와의 대화 시간에 이런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때 저자인 은수연님이 아버지를 용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하고 어땠나?”라고 내가 질문했을 때, 은수연님이 가족들도 나중에 편히 연락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말 해주셨다. ‘과연 그런 날이 올까’ 하는 생각이 든다.

처음에 엄마에게 털어놓았을 때, 엄마가 내 이야기를 들으면 같이 집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어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남아계실 수 있는지, 서운했고 원망스러웠다. 집을 나온 후에 엄마한테 오는 연락에도 신경이 많이 쓰였고 엄마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다.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엄마가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고 있다고 한다. 나 못지않게…….

하지만 나만큼 힘들 수 있을까. 난 지금 혼자이고, 수많은 복잡한 감정들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다.

엄마를 만나게 되면 서먹할 것 같고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편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좋은 날이 오기를 바란다. 엄마와 내가 그 고통을 마주하고, 견디고, 미안함과 여러 복잡한 감정들을 잘 견뎌내고 치유하고 나면 서로 편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은수연님께 질문을 하고 답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해졌다.

재판에서 아버지가 인정했다고 했을 때 나는 그냥 그대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난 아버지가 잘못을 인정하면 끝나는 건 줄 알았고, 더 이

상 나도 아버지도 힘들지 않게 끝내고 싶었다. 법정에 데려간 것, 이 정도라면 아버지에게 따끔하게 혼내준 거라고 나 혼자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재판이 더 남아있고, 그 과정을 지켜보고 견뎌야 하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나를 몹시 힘들게 한다.

은수연님의 책을 보면서 앞으로는 내 마음을 글로 정리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글을 몇 번 쓰다 보니 말로 하기 어려운 것들도 정리되는 것 같다. 이렇게 나의 마음을 글로 쓰면서 내 마음도 추스르고 정리할 수 있어서 좋다.

북콘서트에서 은수연님의 밝은 모습에 에너지를 많이 받았고 그동안 힘들었지만 툭툭 털고 다른 생존자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신 것 같아 너무 존경스러웠고 멘토로 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책에 사인을 받을 때 적어주신 말처럼 나도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내가 흘렸던 눈물들도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서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 엄마에게 쓰는 편지

도경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약 4년간 친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나의 성폭력 현장을 목격하고 난 뒤 바로 친부와 이혼을 했다. 그 뒤로 엄마는 나에게 헌신적일 만큼 노력을 했고 정신과를 전전하기도 했다. 그렇게 시간은 약 10년 정도 흘러갔고 엄마와의 관계는 좋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엄마에 대한 원망을 묻고 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2012년에 한국성폭력상담소 9회 성폭력 생존자말하기대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엄마에 대해 묻어 두었던 감정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때론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었고 죄책감도 들었다.

사실 엄마와의 관계를 말하거나 글로 쓴다는 것이 나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이다. 엄마와에 대한 양가감정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엄마는 나를 구해준 유일한 사람인데……. 엄마도 피해자야'라는 생각과 '왜 알아주지 못했어? 왜 내 의견은 물어보지 않은 거야'라는 충돌에서 난 자유롭지 못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엄마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내

게 폭력적일 수 있는 말들을 들었을 때 나는 그냥 모른 척 넘겨야만 했다. 그래야 편하니까…….

처음 글을 써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런 저런 고민을 하다 하나의 글로 이 양가감정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 두 가지의 편지를 쓰기로 했다. 이 두 가지 편지 모두 나의 감정이다. 이것을 통합하거나 분리한다는 것이 아직 나에게서는 어렵고 힘든 문제이다. 비록 잘 쓴 글은 아니지만 나에게서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 TO 원망하는 엄마에게

오늘은 속 시원하게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내 마음속 말을 용기 내어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글을 엄마가 읽으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짚은 나도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에 편지를 씁니다.

나는 엄마에게 상처를 꽤 많이 받았습니다. 왜 나를 그 지옥에서 일찍 꺼내 주지 못했습니까? 나는 기다렸습니다. 나를 구해주기를 언젠간 구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나를 구해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엄마는 몰랐다고 하지만 나에게서는 그것이 변명처럼만 들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엄마는 방관자였습니다. 수많은 폭력 속에서 몰랐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난 당신의 딸입니다. 고작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아이였습니다. 지켜 주어야 했습니다. 나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집에 오고 싶어도 그 인간이 집에 있을까봐 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어디 있었습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왜 나를 지켜주지 못했습니까?

엄마 그때 왜 나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까? '왜 말 안했어.' 이 말은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그때 저는 말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 건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에게 그 말이 먼 저여야 했습니까? 그 말보다는 토닥거리는 엄마의 품이 더욱 그립고 필요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너무나 아픈 말이었습니다. 당신으로부터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산부인과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왜 한 번도 물어보거나 설명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이 일은 제가 중 심입니다. 왜 여기에 제가 없죠? 왜죠? 답답합니다. 저는 그 인간을 벌할 권 리마저 박탈당했습니다. 왜 저에게 한 번도 묻지 않으셨던 겁니까? 선택권 마저 박탈당했습니다. 상처입니다. 정말 큰 상처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 을 해결할 때 엄마에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지요……. 그것을 저에게 말 하지 마십시오. 정작 저에게 주어야 할 사랑과 믿음은 점점 멀어져 갔으니 까요…….

엄마 나는요, 그 인간을 닮은 나를 볼 때면 죽을 만큼 싫습니다. 아니 차 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엄마는 내가 엄마를 안 닮았 다고 말하시나요? 그것이 저에겐 어떤 의미인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제 몸속에 흐르는 피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제 발 발 그런 말을 하실 땐 한번만 더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엄마 지금 제가 답답하십니까?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냐며 안타까워 하기도 하고 한심해 하기도 하시는지 압니다. 하지만 엄마,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시간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어떤 면에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폭력 사실을 잊고 산다고 해서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생각

은 안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성폭력 사실을 잊고 산다는 것은 제가 없어지 는 의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프기도 하고 덤덤하기도 하죠. 하지만 저 는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대단합니다. 제가 성폭 력을 잊고 산다고 하면 이렇게 치열하고 깨끗하게 살았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엄마에게 섭섭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미안하다 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 지금의 저 그리고 옛날 성폭력을 당했던 저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저 에게 사과하셔야 했습니다. 사실 엄마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것 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엄마 또한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 입니다. 가장 큰 잘못은 자신의 딸이 친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 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폭력의 사실을 알 수 있는 기 회는 많았었다고 생각됩니다. 엄마가 밤늦게 제 방에 들어왔을 때도 그 인 간이 제방에 있었지요.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왜 그냥 넘어 가신 거죠? 엄마……. 저는 지금 제가 숨 쉬는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제 폭력을 이야 기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게 자랑스럽습니다. 엄마도 이런 딸을 인정해 주 셴으면 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일로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겠 지만 어떤 날은 덤덤하기도 하겠지요. 그런 저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엄마 당신이 이 글을 읽는다면 당황하거나 억울하실 겁니다. 하지만 한 번쯤 당신에게 들었던 원망하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고 싶었습 니다. 그럼 이만 글을 줄입니다.

## 돈만 있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란 | 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 TO 사랑하는 엄마에게

폭행이 있던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사실 이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 시간이 그 시간이거든요…….

엄마…… 그 동안 많이 힘드셨죠? 저에겐 그냥 흘러간 시간들이 엄마 혼자 버텨야 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불안정 할 때마다 불안해해야 했고 도망칠 때마다 뒷수습은 엄마 차지였으니까요. 엄마 저는요, 엄마를 볼 때마다 많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난날 엄마에게 이유 없이 화도 많이 내고 못된 소리도 많이 했었지요. 그런 제 모습을 감당해야 하는 엄마는 누구에게도 하소연 할 수 없었지요. 그걸 알면서도 엄마라는 이유로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불안정한 저까지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 저는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사건에 또 다른 피해자는 엄마였을 거예요. 엄마 또한 충격이 컸겠지요. 하루아침에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졌고 억울하셨을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저 내색 못했어요. 제 상처를 보기도 전 벅찼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다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의지할 사람 없이 여기가 온 것 만해도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저 또한 앞으로 더욱 착한 딸이 될게요. 엄마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성폭력 피해생존자가 수사 재판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피해자 유발론, 피해자다움의 강요, 합의종용 등의 2차 피해를 경험하면서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성폭력 피해가 있었음을 증명해야한다. 아주 다행히 피해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어서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게 된다하더라도 성폭력 관련법에 명시된 대로 가해자가 처벌받기란 쉽지 않다.

성폭력 피해 직후 증거물을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를 한 A씨는 1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상담소를 찾아왔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것 같다며 두려워했다.

**“합의를 하자고 집에 찾아오고, 회사도 찾아왔어요.”**

술에 취한 A씨를 강간한 가해자는 구속 상태였는데 가해자의 가족들이

시도 때도 없이 A씨를 찾아왔다. 어느 날은 회사를 퇴근하고 버스정류장에서 동료들과 버스를 기다리는 A씨에게 낯선 중년여성이 다가왔다. 길을 물어보는 줄 알았던 A씨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 그 여성과 마주하였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가해자의 어머니였다. 회사에 A씨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뿐만 아니었다. 가족들과 함께인 주말 저녁에 가해자 가족들이 집으로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던 A씨의 부모님들이 이를 알게 되었다. 합의중용으로 겪는 2차 피해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 “공탁하면 형이 줄어든다고 들었어요.”

가해자 가족의 끈질긴 합의중용에도 가해자가 처벌받기 원했던 A씨는 합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공탁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공탁은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납부해 가해자(피고인)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참작이 되는 제도이다. 현실에서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형량을 낮추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용된다. 성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피해자의 연령 및 피해유형을 불문하고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상당금액 공탁’이 있다. A씨의 사례로 본다면 가해자는 2년 6개월~5년의 형량을 받도록 기준이 되어있는데, 가해자가 상당금액의 공탁을 하면 5년보다는 2년 6개월에 근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에 정해진 대로 처벌 받기 원하는 피해자의 합의 거부 의사가 일방적인 공탁을 통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 “법원에서 제 주소랑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요.”

더 큰 문제는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의 정보가 공탁을 하겠다는 가해자에게 언제든지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공탁은 공탁서를 작성해서 공탁관에게 제출하고 공탁금을 은행에 납입하는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데 공탁서에는 공탁금을 내는 공탁자 외에도 공탁금을 찾을 피공탁자, 다시 말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도 적게 되어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있어야만 공탁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법원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도 손쉽게 알 수 있게 된다.

A씨도 가해자들이 공탁금을 내겠다고 하며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에서 A씨가 동의하는지 물어보는 전화를 걸어와 다행히 A씨는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피공탁자의 개인정보를 공탁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피공탁자(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가해자에게 바로 피해자의 정보를 알려주는 법원도 있다. 성폭력 피해아동 B의 아버지는 피해 직후 경찰서에 고소하면서 피해아동이 겪고 있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감안해 추후 아무런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고,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가해자를 수사해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고소 이후 1년간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어느 날 집으로 가해자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너무 당황한 B의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집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공탁금을 내려고 법원에 요청해서 피해자의 주소, 전화번호를 안내받았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가해자가 공탁을 하려고 할 때 사전에 피해자에게 알려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해자 측에 알려주면서 빚어진 심각한 피해 사례이다.

## “돈만 있으면 형량이 낮아지는게 공탁의 취지가 아니지 않나요?”

현재 공탁제도는 합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피해자가 피고인에 비해 권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피고인의 불리한 지위를 고려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한다. 하지만 위의 사례들처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단지 공탁을 한 것만으로 양형이 줄어들게 된다면 이는 제도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탁제도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서 작용하려면 성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공탁 절차가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보복의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한 피해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알려지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를 가중시키게 한다. 또한 재판부는 공탁을 한 가해자가 반성과 참회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 단지 상당금액을 공탁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가해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는지, 피해에 대한 회복의 노력으로 공탁을 한 것인지를 면밀하게 판단하여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 피해자가 피해회복의 노력이라고 여기지 않는데 공탁 자체가 긍정적인 양형인자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개선도 필요하다.

최근 모 대기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상당한 금액의 공탁을 하고, 형량이 1년 줄어들었다는 뉴스를 보았다. 돈만 있으면 형량이 낮아진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공탁제도가 원래 의도대로 반성과 참회를 전제로 한 피해회복의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 장다혜, “성폭력 ‘형사합의’에 관한 페미니즘 법학적 경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4

통계 이야기  
2012년 상담통계 분석  
날말퍼즐  
아낌없이주는나무

# 2012년 상담통계 분석

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 2012년 상담통계 현황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2년 전체상담은 1,437건(2,390회)이며 이중 성폭력상담은 1,321건(2,251회)이다. 전체 상담횟수 대비 상담건수의 비율은 60.1%로 상담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상담이 많았음을 뜻한다.

### ● 피해자 가해자 성별

여성 피해자가 1,261건(95.5%)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남성 피해자는 60건(4.5%)로 나타났다. 가해자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가해자 전체 1,321건 중 1,279건(96.8%)이며 여성은 42건(3.2%)로 남성 가해자가 압도적이다.

### ● 연령별 피해 가해 유형

모든 연령대에서 강제추행이 521건(39.5%)으로 가장 높은 피해유형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강간 347건(26.3%) 이었다. 형사처벌법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성폭력의 경우 성희롱(언어적 성폭력 등) 피해는 전체 95건(7.2%), 스토킹 피해는 50건(3.8%)으로 나타났다.

가해 연령을 살펴보면 성인 가해자(21세-59세)에 의한 가해가 1,051건(79.6%)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청소년 가해자에 의한 가해는 147건(11.1%)으로 나타났다.

###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099건(83.2%)으로 가장 많았다. 성인은 직장 내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236건(28.5%)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은 학교나 학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77건(29.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어린이와 유아의 경우 친족, 친인척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각각 75건(52.1%), 30건(50.5%)로 절반을 넘어서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2012년 상담 동향 및 제언

### 가족·친인척 대리인의 상담 의뢰 증가

2012년 상담통계 중 성인 피해자 사례에서 가족친인척 대리인이 상담을 의뢰하는 비율은 전년에 비해 17.2% 증가한 122건(37.2%)이다. 이러한 변화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되면서 성폭력 피해를 숨기지 않고 주위에 알려내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피해자가 증가하였음을 말해 준다. 가족친인척이나 주변 지인이 성폭력 피해 당사자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숨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할 대리인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반길만한 변화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치유를 벗어나서 대리인의 판단과 역할이 우선되는 상황은 경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자칫 성폭력피해자를 무조건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성폭력피해자가 사건 해결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대리인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 증가

스토킹 사례는 2012년 전체 성폭력 상담 건수 중 49건으로 3.7%의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피해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 친밀한 관계(전 현 배우자 및 애인)에서 발생하여 사건이 은폐되기 쉽다는 점, 강간이나 카메라 이용촬영 등 다른 성폭력이 함께 동반되는 경향이 높다는 점 등의 복합적인 이유들로 피해의 심각성이 두드러졌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 확산 이후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톱킹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2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스톱킹 피해유형에서는 가해자의

93.9%가 아는 사람이었고 그 중 친밀한 관계가 65.3%로 전 데이트 상대, 전배우자, 현 데이트 상대가 주를 이루었다.

스토킹은 심한 경우에 목숨을 잃기도 하는 중한 범죄인 만큼,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스톱킹을 규제하는 강력한 법을 두고 처벌한다. 한국에는 1990년대부터 세 차례 스톱킹 방지법 입법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모두 무산되었고 2012년에 새롭게 발의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물론 스톱킹 가해자의 범행 내용에 따라 사안별로 대응 가능한 법률이 존재하며 2013년 4월부터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속적 괴롭힘’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경범죄 조항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가해자는 스톱킹 가해 행위에 비하여 경미하게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신설되는 ‘지속적 괴롭힘’ 죄로 가해자를 처벌한 경우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할 수 없고, 가해자는 8만원의 벌금을 물고 스톱킹을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상담에서 가해자를 ‘주거침입’죄나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했음에도 가해자가 스톱킹을 멈추지 않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스톱킹의 법률적 규제 방안은 신설된 경범죄나 기존의 법 테두리 내의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 등의 죄가 인정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스톱킹 행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스톱킹 방지법이 재정되어 스톱킹 가해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답보 상태인 직장 내 성폭력 문제

2012년 전체 상담통계 중 직장 내 성폭력은 전체 232건(18.8%)이다. 이중 고용주와 상사로부터의 피해가 158건(63.7%)으로 업무나 고용 상에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가해자로부터의 성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고용주와 상사로부터의 피해가 158건(63.7%)으로 업무나 고용상의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가해자로부터의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객이나 거래처에 의한 피해도 17건(6.9%), 11건(4.4%)으로 나타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관계 내 성폭력 피해를 구제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직장 내 성폭력 상담 사례의 경우 적은 수치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청소년 노동자가 겪는 성폭력은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연동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게끔 되어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며, 직장 내 성희롱 고충처리기구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막상 직장 내 성폭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고용상 부당한 조치를 겪게 되거나 동료와 상사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부당한 직장 내 조직문화를 바꿔내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성희롱예방교육에서 벗어나 조직 구성원들의 젠더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책임부처의 관리 감독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직장 내 청소년 성폭력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국가기관은 청소년의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파악하고, 직장 내 청소년 성폭력 피해 당사자들이 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 및 대처 관련 정보를 더욱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 성폭력으로 발생한 심리적 외상이 '치상'으로 인정된 사례 등장

최근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과 그로 인한 불안, 우울, 분노,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과 같은 심리적 외상을 '치상'으로 인정한 판례가 나타나고 있다. 2012년 본 상담소에서 지원하여 '강제추행치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의 경우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아 왔었다. 이 사건과 같이 강간 및 강제추행치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심리적인 부분까지 인정된 판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상담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 성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다. 성폭력 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외상은 신체적 상해 이상으로 피해자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 외상은 신체적 상해에 비해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물리적 상해 중심의 치상판결은 이와 같은 판례들을 중심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 본 통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소 홈페이지(www.sisters.or.kr) 상담통계란을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로  
연쇠

- 같은 성(性)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흔히 이성애자의 반대말로 쓰임.
- 어떤 대상에 대하여 지니는 대조적인 감정. 이번 호 <성폭력과 사람들> 참고.
- 과상하고 이상야릇한 이야기.
- 작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6월 19일부터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확대되는 제도로 수 사부터 재판까지 검사에 의해 지정된 국선번호인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옛 이름. 이번 호의 <기획특집> 참고
-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
- 권고하는 형식으로 직책 따위를 그만두게 하는 일.
- 아무것도 없는 빈 곳.
- 법률에서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는 일을 뜻하는 말. 성폭력 범죄에서는 가해 자 측의 ○○중용으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기도 한다.

세로  
연쇠

- 올해 3월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스토킹이 ○○○○이런 조항으로 신설되어 큰 논란을 일으켰다.
-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엾게 여기는 마음.
- 남에게 의지하거나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섬. 이번 호의 <대안읽기>에서는 쉼터 입소자에게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이 실렸다.
- 죄에 해당하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 처벌불원 또는 상당 금액 공탁은 ○○인자의 감 경요소로 규정되어있다.
- 군사(軍事)에 관한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 ○○○ 제92조6 추행죄는 인 권침해적 내용을 담고 있다.
- 법률용어로 검찰이 범죄의 단서를 직접 찾아서 조사하는 일.
- 작년 말 형법에 신설된 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죄.
-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조례를 제정하였다.
- 일본 드라마 <파견의 품격>의 리메이크작으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택한 자격증만 백 여 개인 수퍼 만능 일꾼 '미스김'이 나오는 드라마 제목.
- 법률용어로 변제(辨濟), 담보(擔保), 보관(保管) 등의 목적으로 금전, 유가 증권 따위를 공 탁소에 맡겨 두는 일. 이번 호의 <사례연구> 참고.

〈반성폭력〉 6호를 읽었다면 맞출 수 있는 낱말퍼즐.  
힌트는 물론 본문에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정답을 6월 말까지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추첨하여 두 분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ksvrc@sisters.or.kr

주 소 (121-884)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번지 2층 한국성폭력상담소



# 바

성폭력 → Vol. 6

펴낸곳 \_ (사) 한국성폭력상담소

펴낸이 \_ 백미순

만든이 \_ 최영지

디자인 \_ 디자인IS

펴낸날 \_ 2013년 5월 31일

주소 \_ (121-884)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번지 2층

전화 \_ 02-338-2890~1

팩스 \_ 02-338-7122

홈페이지 \_ [www.sisters.or.kr](http://www.sisters.or.kr)

이메일 \_ [ksvrc@sisters.or.kr](mailto:ksvrc@sisters.or.kr)

블로그 \_ [www.stoprape.or.kr](http://www.stoprape.or.kr)

트위터 \_ [www.twitter.com/stoprape](http://www.twitter.com/stoprape)

「반성폭력」은 디자인IS의 재능기부로 디자인되었습니다.